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면단위 인구규모가 3만 이상이 된 교하면과 조리면이 지방자치법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2002년 3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읍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정원과 기초생활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<경기도 기획12200-10241(2002,2,4)>에 의한 직급별 신규정원이 증원 승인되어 현행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규정(안 제2조)

- 총 정 원 : 807명 → 833명 (증 26명)
- 집행기관 : 789명 → 815명 (증 26명)
- 의회사무기구 : 18명 → 18명

※ 신규정원 승인 내역

(단위 : 명)

구분		계	일 반 직					기능직	비고
			소계	6급	7급	8급	9급		
계		26	26	4	6	-	16	-	
읍 승 격	소 계	19	19	4	6	-	9	-	
	교하읍	11	11	2	3	-	6		
	조리읍	8	8	2	3	-	3		
사회복지직		7	7	-	-	-	7	-	

※ 사회복지직 증원배치계획(7명)

- 본청 2명, 월릉면·탄현면·광탄면·파평면 각1명씩 증원(1명→2명)
- 금촌1동 1명 증원(2명→3명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지방자치법

제4조 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③자치구가 아닌 區와 畵 · 面 · 洞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,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 · 分合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 다만, 區域變更은 特別市長 · 廣域市長 · 道知事(이하 “市 · 道知事”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

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4조 (표준정원의 책정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 · 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 · 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또는 9월에 하여야 한다.

-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,
-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난 3월7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읍 설치 및 정원승인(행정자치부 제 2002-17호)을 받았고,
-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수요 증가에 따른 기능강화를 목표로 경기도로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“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”이 시달(경기도 기획 12200-10241/02.2.4)되어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법적인 적합성에 문제점이 없음.

나. 내용타당성

- 본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건은
 - 면단위 인구규모 증가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읍 설치 승인과 관련한 지방공무원 정원증원과
 -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사회복지직 1명당 기초생활수급가구 100가구를 기준하여 부족한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우리시는 정원책정당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 3,027가구로 정원 30명이 책정됨에 따라 이번에 7명을 증원 하는등 내용면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읍 설치에 따른 정원 총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